

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

소관부서 : 수도과

제정 2009· 3·10 규칙 제388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 23조에 따라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중요자산) 조례 제18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토지
2. 건물
3. 구축물
4. 관설비
5. 기계 및 장치
6. 취수펌프
7. 공구, 기구, 비품
8. 차량

제3조(관직지정) 조례 제21조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.

제4조(준용) 법령, 조례 및 그 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